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강동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-135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.

발 의 자 : 강동오, 고병준, 김승수, 백남환,  
이상원, 차해영, 한선미, 최은하

## 1. 개정이유

고령화와 저출산,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으로 헌혈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. 이에 적극적인 헌혈 문화를 조성하고, 장려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헌혈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추가(안 제10조제1항)
- 나. 마포구 소재 학교 재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(안 제10조제2항)

## 3. 관계법령

- 1)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
- 2)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3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4. 10. 16. ~ 10. 22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호 중 “· 제4조”를 “제4조”로 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
2. 구 소재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) 재학생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협회의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8조(협회의의 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제4조</u>----- -----</p>
<p>제10조(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<u>구청장은 헌혈장려를·위하여 구민이 마포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경우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0조(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 <u>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구청장은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</u></p> <p>2. <u>구 소재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) 재학생</u></p>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제10조(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

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해 「혈액관리법」 제6조에 따른 관내 소재 헌혈 관리기관에서 헌혈을 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
2. 구 소재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) 내에서 헌혈한 재학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소 의약과 최선아
연 락 처	02-3153-9123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혈액관리법

[시행 2023. 6. 22.] [법률 제18626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 혈액관리법 시행령

[시행 2023. 6. 22.] [대통령령 제33454호, 2023. 5. 9., 일부개정]

**제2조의3(헌혈의 권장)**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·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